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인제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2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18일

발 의 자 : 김인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형, 이석주, 이상훈, 김정태,
홍성룡, 정재웅, 신정호, 박순규,
전병주, 고병국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8만실 공급목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현재까지 공급물량은 약 2만8천호 정도에 그치고 있고, 이 중 사업인가 완료는 약 1만호에 불과하여 공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함.
- 2018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‘공적임대 24만호 공급계획’ 및 ‘추가 8만호 공급계획’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 공급계획 중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.
- 이에 역세권의 범위를 모든 역으로 확대하고,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, 추진지구 외 지역에서 사회 사업계획이 취소

될 경우 용도지역 및 지구·구역, 지구단위계획 등을 지정당시
로 환원시키며, 조례의 시행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
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세권을 서울시 내 모든 역으로 확대(안 제2조제1호)
- 나. 주택 외 시설에 대하여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(안 제5조제5항)
- 다. 축진지구 외 사업계획 취소 시 환원규정 신설(안 제10조제4항)
- 라. 통합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 자격 조정(안 제20조제5항)
- 마. 조례 시행기간을 '22.12.31일까지 연장(부칙)

3. 기타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”를 “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”로 하고 각 목은 삭제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하이며,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”를 “주택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”를 “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역세권”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</u></p> <p>나. <u>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</u></p> <p>다. <u>폭이 25m 이상인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----- ----- <u>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</u>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제5조(사업대상지)

① ~ ④ (생략)

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,000제곱미터 이하이며,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⑥ (생략)

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·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·

제5조(사업대상지)
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주택 이외의 시설인 경우 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업계획의 취소 등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 각 호-----

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.

-----.
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제20조(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① ~ ④ (생략)

① ~ ④ (생략)

⑤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,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.

⑤ -----,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⑥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기간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.